

법무부 지침 및 고시

1 공증인 직무 관련 지시(2011. 12. 2. 법무과-8356)

공증인의 올바르고 적정한 공증사무 수행을 위하여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각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포함)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

- 다 음 -

- 공증사무는 국민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예방사법의 기능을 하는 중요 국가사무로서, 부실한 공증사무 수행은 공증의 효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공증인법 제3조), 국가사무의 신인도 하락 및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한 해 동안 법무부 공증서류검열을 통하여 공증 관계 법령 및 지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이 된 공증인 인원(공증인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포함)이 총 188명(정직 3명, 과태료 132명, 견책 53명)에 달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증감사를 실시하고, 공증인법 및 관련 지시를 위반한 공증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지속할 예정이오니, 각 공증사무소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공증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올바른 공증사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불임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공증감사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되는 주요 징계 사유들로서 엄중히 금지하며, 향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엄히 징계할 예정이오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공증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주요 징계사유

■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공증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유형들로서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공증을 부실화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이하 같음)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인의 보조자가 작성한 증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증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서명한 용지를 이용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 공정증서 작성(유언·어음·수표 공증 포함) 및 사서증서 인증(선서인증, 정관인증, 법인의사록인증, 번역문 인증, 전자공증 등 포함)에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됨.
- 예를 들어 공증인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을 이미 알고 있거나 공증 과정에서 보았더라도,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공증인법 제38조), 공증인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지 않고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공증인법 제57조) 공증인법 위반이 됨.
- 공증인의 보조자도 공증인 대신 인증행위 자체를 할 수는 없으며, 공증인의 지시를 받아 공증촉탁서의 접수 및 작성 등 공증인이 인증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나 인증서 교부행위 등 인증의 효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공증인의 보조자가 위와 같은 보조행위 이외에 공증인이 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대면공증에 해당함.

② 공증인 서명하도록 규정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의 용지에 공증인이 미리 서명을 하여 놓은 행위

- 아직 서식을 인쇄하지 않은 백지 용지에 공증인이 미리 서명을 하여 비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됨.

③ 실제 촉탁인은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인의 직원(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사무직원, 대리인, 보조인 등을 포함)을 촉탁대리인으로 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 공정증서 작성(유언·어음·수표 공증 포함), 사서증서 인증(선서인증, 정관인증, 법인의사록인증, 번역문 인증, 전자공증 등 포함)에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됨.
- 예를 들어 단골 금융기관, 법무사 사무실 등 빈번히 공증 촉탁을 하는 거래처에 공증인의 직원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증촉탁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받아와 공증인의 직원을 촉탁대리인으로 하여 증서를 작성, 교부(우편·인편 송부)하는 행위

④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하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증서원부·인증부·확정일자부 등 공증장부에 기재하고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증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예를 들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내 작성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행일자에 맞춰 증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 전년도 증서원부·인증부 상에 장부 폐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년도 말월에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거나, 증서원부·인증부의 일부 등부번호를 공란으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 등부번호로 증서(인증서)를 소급 작성하는 행위를 중징계한 사례가 있음.
-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일자부에 일부 등부번호의 일자인과 계인란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사후에 문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그 공란의 일자로 소급하여 일자인과 계인을 찍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행위

⑤ 촉탁(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증서, 촉탁서, 위임장 등 서식에 촉탁(대리)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공증인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거나 그 보조자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서명을 대필하게 하는 행위

⑥ 사서증서·법인의사록·정관 등 인증 시 그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 하여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날인을 누락하는 행위

⑦ 법인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한 후에는 그 의사록을 수정할 수 없음에도 인증이 부여된 의사록을 빼내고, 내용 등이 변경된 의사록으로 바꾸어 넣는 행위

※ 공증인은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요령”(2010. 9. 1. 시행, 법무부 법무과-6046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요령 시달 및 이행지시’ 참조)을 준수하여야 함.

⑧ 공증인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임의 감액하는 행위

※ 금융기관, 법무사 사무실 등 빈번히 공증을 촉탁하는 거래처에 40%~50% 가량 수수료를 할인하여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관련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27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2] 형법 제227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양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서증서인 투자증서의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증촉탁 신청서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사 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위 공소외인이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위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양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에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2 공증사무 감사시 주요 지도사항

①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	
1	1)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2명 이상을 지정 (공증인법 제15조의3) ※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 2010. 2. 7. 이후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에 변경(신규 지정, 탈퇴)이 있을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을 경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공증인법 제15조의3) ※ 공증담당변호사를 새로이 정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하여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신고」를 소속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아야만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자공증시스템→자료실 참조) ※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구성원에서 탈퇴, 공증담당변호사 사임 등)에 소속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증담당변호사 변경 신고」를 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아야만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음
	3)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 재임명 할 수 있음 (공증인법 제15조) ※ 임기 만료 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신청 (공증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4)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유효기간은 5년, 재인가 할 수 있음 (공증인법 제15조의8)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인가 신청 (공증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 2010. 2. 7. 이전에 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은 2010. 2. 7.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므로 2015. 2. 6. 유효기간 만료 (공증인법 부칙 <제9416호> 제3조 제1항)
2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신고 수리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공증인법 제15조의10)
3	1)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은 직무 수행 전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변경 시 변경신고) (공증인법 제20조)

3	2) 증서 상의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서명은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고된 서명과 직인 이어야함 (공증인법 제20조 제2호,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8호)
4	1)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은 직무 수행 전 신원보증금 납부 (공증인법 제18조, 공증인 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3조 부칙 제3조)
	2) 신원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후 보험기간이 도래하기 전 갱신
② 공증인의 보조자	
5	보조자신고철 비치 (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6	보조자의 채용 · 교체 · 해고 · 사망 시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 (공증인법 제23조, 공증 인법시행령 제4조)
7	공증인의 보조자로부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서를 징구 (공증인법시행령 제5조)
③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및 공증서류검열부	
8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18조)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철 비치 (공증인법시행령 제11조) ※ 2012년부터는 전자공증시스템에 공증업무처리현황을 입력하고, 동 시스템에서 현황을 출력 하여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철에 편철
9	공증서류검열부 비치 (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10	직전 공증서류검열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되었는지 점검
④ 공증사무실	
11	공증서류 및 각종 장부는 도난, 분실, 소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창고에 보관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사무실 내 캐비넷 또는 보조자의 서랍 등에 공증서류 등을 보관하여서는 안 됨
12	공증서류는 증서 작성 시 요건을 구비 (공증인법 제31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9조 등) ※ 공증서류 작성 시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하였음에도 추후 보완 등을 이유로 증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됨

13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서명하도록 규정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의 용지에 미리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을 하여 비치하여서는 안 됨(속칭, 서명지 비치 안 됨) ※ 서식이 아직 인쇄되지 않은 백지 용지에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미리 서명을 하여 비치하는 것 역시 안 됨 ※ 공증인 직무 관련 지시(2011. 12. 2. 법무과-8356) 참조
⑤ 공증창고	
14	공증창고를 확장, 축소, 구조 변경·개조 등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15	공증창고에 소방시설 갖추어야 함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별표1」 4. 5.호)
16	공증창고를 정리정돈하여야 함 공증창고에 공증업무와 관련 없는 비품 및 서류, 전열기구 비치를 하여서는 안 됨
⑥ 증서 작성	
17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인 보조자가 작성한 증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증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서명한 용지를 이용하여 증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됨 ※ 공증인법 제38조, 제57조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증과정에서 공증인 촉탁인의 얼굴과 신분을 확인하였더라도 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공증으로 공증인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음
18	1) 증서 상에 촉탁(대리)인, 서약인, 증인 등의 서명날인 누락 되어서는 안 됨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33조)
	2) 공증인 보조자 또는 제3자가 증서 상에 촉탁(대리)인, 증인, 서약인 등의 서명을 대필하여서는 안 됨 ※ 공증인 보조자 또는 제3자가 증서 상에 촉탁(대리)인 또는 서약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행위는 기명날인에 해당하여 공증인법 위반

19	1)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증 시 대리권 증명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누락 되거나,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누락 되어서는 안 됨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14조)
	2) 보조자가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 위임내용 등을 대필하여서는 안 됨
	3) 대리권 증명과 관련하여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함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14조)
20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은 증서에 서명날인, 간인을 하여야 함 (공증인법 제38조 제3호 제5호)
21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는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함 (공증인법 제40조 제2호)
22	2010. 2. 7.자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서식을 사용, 위 규칙에 정하지 않은 비법정(임의)서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월평균 사용회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리 통보를 받아야만 서식 사용
23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됨 (공증인법 제25조) 예) 이자제한법(30%), 대부업법(2010. 7. 21. 이전은 49%, 2010. 7. 21.~2011. 6. 26. 44%, 2011. 6. 27. 이후 39%)에 정한 이율을 넘는 증서를 작성
24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 첨부 (공증인법 제42조) ※ 표지 하단에 첨부인지액 기재, 표지이면에 인지 부착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25	1) 유언공증 시 증인 및 유언집행자는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제1098조)가 없어야 함
	2)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2호)에 규정된 ‘별지1호’ 서식(신원조회회의뢰서)으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증인 및 유언집행자에 결격사유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보서를 증서원본에 편철하여 보관

26	1) 증서 작성 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 보조자 또는 제3자가 공증촉탁서 상의 ‘성명’, ‘위 출석확인’, ‘수령자확인란’ 등 소정사항을 대필하여서는 안 됨
27	증서에 글자의 수정 · 삽입 · 삭제 방법 준수 (공증인법 제37조) 예) 칼로 긁거나 화이트(수정액)를 이용하여 증서에 기재된 문자를 지우고 수정하여서는 안 됨
28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수정, 난외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 (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29	외국어 문서를 인증할 때 한글번역문의 첨부 (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제59조)
30	1)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시 3일 내에 본인에게 통지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 규칙 제17조) ※ 통지일자 계산 시 증서 작성 다음날부터 산입하여 3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평일)까지 통지
	2) 통지서 2부 작성,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첩하되 등기 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
31	법인의사록(주주총회 · 이사회 의사록 등) 인증 시 인증서 사본에 공증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또는 대리권증명서류, 진술서, 규정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을 차례로 첩하여 보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제29조)
32	증서 표지에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 표시 안 됨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증서 표지에 촉탁인 이름, 법률행위명칭(금전소비대차) 등 표시 불가
33	인증의 대상인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 인증문에 기재 (공증인법 제57조) ※ 용어정의 • 서명(署名) - 행위자가 문서 등에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써 넣음 • 사인 - 문서 등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 기명(記名) - 문서 등에 성명을 적음(대필은 기명에 해당)

34	사서증서의 등본 인증(원본대조) 대상인 문서는 사서증서에 한 함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28조) - 법무부 등의 공공기관 발행 문서, 여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등본 인증 불가
35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원본대조) 대상인 문서는 사서증서에 한 함 (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제32조) - 법무부 등의 공공기관 발행 문서, 여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사본 인증 불가
⑦ 공증인 수수료	
36	계산서철 비치 (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 ※ 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제19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 1통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 계산서철에 보관
37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에 계산의 근거 기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 ※ 계산서에는 기재사항 외에 여백에 '증서번호'를 기재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통장 사본은 여백에 '품목명', '수량', '증서번호' 기재
38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함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 ※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속칭 할인) 안 됨
⑧ 신청서	
39	신청서철 비치(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40	1) 신청서에 신청구분, 발급 통수, 신청이유, 첨부서류 란 등 소정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신청(대리)인의 서명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됨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2) 심사결과란에 공증인의 심사결과(가·부 등) 기재
41	1) 집행문 부여 관련 규정 준수 (공증인법 제56조의3) ※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2) 집행문 제도 부여 또는 수통 부여 시 사용증명원, 수통부여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42	1) 집행증서의 승계집행문 · 증명서 등본 송달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제3항)
	2) 집행문 수통 부여 또는 재도 부여 시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호, 제35조)
⑨ 장부	
43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정관인증서철, 거절증서등본연철장을 비치하고, 증서를 접수번호 순으로 철하여 보존 (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지 30조)
44	증서원부, 인증부, 접수부, 확정일자부, 신탁표시부, 면식부 비치 (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45	증서원부 · 인증부 · 확정일자부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인증 (공증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제5조)
46	증서원부, 인증부, 접수부의 소정사항 기재를 3일 이상 누락하여서는 안 되고, 필체를 흘려 쓰거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등 불량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 장부는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 기재 불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9조) ※ 장부에 기재한 글자를 수정을 하였을 경우 삭제한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한 글자에 두 줄로 선을 긋고, 장부 좌측 여백에 삽입 및 삭제한 자수 또는 행의 수를 기재한 후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
⑩ 인증부	
47	연도 종료 시 장부 마감을 위한 폐쇄 하여야 함 ※ 장부에 사선을 긋고 당해 연도가 종료되어 장부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공증인의 직인을 압날
48	1) ‘촉탁인의 주소, 성명(법인의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란에 촉탁인(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정관, 의사록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인 주주 또는 이사를 기재하고, 촉탁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1인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인원수만을 기재(공증인법시행령 제23조)

48	2) '증서의 서명날인자' 란에는 인증의 대상이 된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를 기재 예) 주주총회의사록의 경우 의사록에 서명(기명)날인한 이사들을 기재하여야함에도 촉탁인 인 주주 또는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3) '인증방법' 란에는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인인증', '면전인증', '원본대조' 를 구분하여 기재
	4) '간인' 란에는 촉탁인에게 교부하는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 (공증인법 제58조)
	5) 정관·의사록 인증 시 인증부의 '비고' 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 (공증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증서원부	
49	1) '촉탁인의 주소, 성명(법인의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란에 촉탁인(촉탁인이 법인 인 경우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대리인의 촉탁 시 본인에게 통지하고, 증서원부 '비고' 란에 통지의 요지, 통지의 방 법, 통지연월일을 기재(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통지연월일은 우체국에 통지서를 인계하고 받은 우편물수령증에 기재된 일자 기재하여야 함에도, 간혹 증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 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인	
50	1) 확정일자 계인을 장부와 문서에 명확히 압날
	2)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의 청구를 받은 때 당일자로 확정일자인을 압날 ※ 확정일자를 소급하여 압날 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유선으로 미리 연락을 받고 확정일자란 을 비워놓았다가 익일 또는 며칠 후에 문서를 가져온 경우 전일 또는 그 이전 일자로 압날 하여서는 안 됨
	3) 일자인을 소급하여 정정은 불가

* 출처 : 법무부 공증인직무교육 및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보조자교육 자료

③ 법무부 유권해석

(1) 공증인법 제31조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관련

□ 질의 요지

- 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시행)」제13조에 규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의 ‘서명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 답변

<질의 ①에 대한 회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의 ‘서명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질의 ②에 대한 회신>

- 위임장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임장에 첨부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출처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 관련 규칙 해설

1) 기본수수료¹⁾ 산정 위한 ‘법률행위 목적가액’ 결정 방법²⁾

-
- 1)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수료 규칙 제2조는 기본수수료, 제3조는 부가수수료, 제27조는 할증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
 -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기본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전소비대차 계약(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 결정되어야 함(수수료 규칙 제2조).

- ① 대주의 대여 급부 가액과 차주의 반환 급부 가액을 합산(수수료 규칙 제5조)³⁾
- ② 이자는 목적가액에 합산하지 않음(수수료 규칙 제12조).
-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양도담보계약이 함께 하나의 증서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가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함(수수료 규칙 제7조 준용).

2) 준소비대차계약⁴⁾(채무변제계약 포함) 공정증서의 경우

-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준하여 목적가액을 산정함.
- ② 예를 들어, 준공 후 공사대금 1억 원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인(차주)의 공사대금 지급채무 가액(1억 원)과 수급인(대주)의 완공의무 가액(=대금지급채무 가액) 1억 원을 합산함.

3)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경우

- ① 발행의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의 액면 금액을 목적으로 함.
- ② 예를 들어, 1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인이 대여자에게 1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은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 됨.

4) 부가수수료(수수료 규칙 제3조)

- ① 증서 장수는 표지를 제외한 모든 장수를 포함
- ② 서식 규칙의 법정 서식에 대하여는 수수료 규칙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

3) 공정증서 작성과 대여금 지급의 선후 불문하며, 공정증서 표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즉, ① 대주가 차주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대주의 급부(대여금 지급 채무) 1,000만 원과 차주의 급부(차용금 변제 채무) 1,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2,000만 원을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으로 하며, ② 대주가 차주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원금 500만 원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만약 공정증서에 대여금액을 1,000만 원으로 표시한 경우 대주의 급부는 1,000만 원이나, 이와 달리, 공정증서에 대여 금액을 미변제 금액 500만 원으로 표시한 경우 대주의 급부는 500만 원이 됨. 차주의 급부(차용금 변제 채무) 가액도 동일하게 판단함.

4) 공사대금 1억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하므로 그 법정 서식의 글자 수에 관계없이 1장으로 봄.

5) 원본과 함께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 작성 시 정본·등본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정본·등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 규칙 제24조에 의한 수수료를 받아야 함.

6) 기타

- ① 기존 질의회신 중 이 산정 기준과 배치되는 내용은 변경함
- ② 수수료 임의 할인은 금지되어 있음
- ③ 이 기준은 공증사무소에 공지된 때부터 시행함.

[참고] 사례 분석

가. 사실관계

대주가 차주에게 변제기 1년, 이율 연 20%로 1,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의 수수료

나. 구체적 적용

(1)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위 사례에서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은 대주의 급부인 1,200만 원의 대여금 지급 채무 가액 1,200만 원과 차주의 급부인 1,200만 원의 차용금 반환 채무의 가액 1,200만 원을 합산한 2,400만 원임(수수료 규칙 제5조).

※ 연 20%의 이자 지급 채무는 목적가액 산정에서 제외(수수료 규칙 제12조)

(2) 기본수수료

목적가액이 2,400만 원인 법률행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44,000\text{원} + (2,400\text{만 원} - 1,500\text{만 원}) \times 3 / 2,000 = 57,500\text{원}$
 (수수료 규칙 제2조).

(3) 부가수수료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를 작성할 경우, 관계자를 기재하는 서식(별지 제21호 서식) 1장,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 자체를 기재하는 서식(별지 제25호 서식과 제25호의2 서식) 2장, 공증인의 확인사항 등의 기재와 참석자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는 서식(별지 제32호 서식) 1장,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는 서식(별지 제12호 서식) 1장 합계 총 5장이 됨.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부가수수료는 4장을 초과하는 1장(5장 - 4장)에 대하여 500원이 됨(수수료 규칙 제3조).

※ 할증 사유가 있으면 수수료 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위 금액(기본수수료+부가수수료)의 50%를 가산함.

(4) 정본 · 등본 수수료

정본 · 등본이 함께 작성되는 경우, 정본 · 등본에는 이를 표시하는 서식이 1장 더 추가되므로 이 사례의 경우 정본 · 등본 수수료는 각각 3,000원[(5+1)장×500원]임.

(5) 수수료 총액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공증인이 촉탁인들에게 청구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총 64,000원임.

① 기본수수료	57,500원	③ 정본수수료	3,000원
② 부가수수료	500원	④ 등본수수료	3,000원
합 계 총 64,000원			

* 출처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4 법무부 고시 제2012-155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28.

법무부장관

- 200. 재단법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201. 재단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202. 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 203.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5 법무부 고시 제2012-219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7.

법무부장관

- 204.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6 법무부 고시 제2012-0262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28.

법무부장관

- 205.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7 법무부 고시 제2012-0378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14.

법무부장관

- 206.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207. 재단법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209.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 210.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 211. 재단법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